

【 7 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제의년월일 : 1997. 6. 9.

제 의 자 : 의 장

□ 주 문

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양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할 것을 결의함.

□ 주요골자

- 양주군수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결특위 위원을 李興圭, 李商源, 禹忠國 朴榮遠, 柳在元, 金光培, 金榮安의원으로 구성 운영하려는 것임.
- 운영기간 : '97. 6. 21 ~ 6. 24(4일간)

【 8 】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7. 5. 10.

제 출 자 : 양 주 군 수

□ 제안이유

양주군 직제규칙이 '96. 2. 9일 및 '96. 5. 6개정 공포·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행정 기구 명칭에 맞게 그 명칭을 변경하고 경영수의사업발굴단과 경영진단기획단을 통합설치운영하는 한편,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용어를 수정 보완하려는 것임.

#### □ 주요골자

- 가. “자치단체”를 “양주군”으로 개정하고, “경영수의사업발군단”을 “경영수의사업발굴 및 진단기획단”으로 개정함.(안 제2조, 안 제7조 제1항, 제8조 2항 3호 안 제10조)
- 나. “경영진단기획단구성”을 “경영수의사업발굴 및 진단기획단 설치”로 하고 “경영진단 기획단”을 “양주군 경영수의사업 발굴 및 진단기획단”으로 함.
- 다. “기획실장”을 “기획감사실장”으로 함.(안 제9조 ①항 제2호증)
- 라. “예산계장”을 “자치경영계장”으로 함.(안 제11조 제 ①항)
- 마. “지방자치단체의 장과”를 “군수와”로 함.(안 제11조 제 ①항)
- 바.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은”을 “군수는”으로 “지방의회”를 “양주군 의회”로 함. (안 제11조 제②항)

#### 양주군조례 제 호

#### 양주군경영수의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양주군경영수의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경영수익사업)중 “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발굴단”을 “양주군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진단기획단”으로 한다.

제4조(기금의 운용관리) 제2항 제3호중 “자치단체장이”를 “군수가”로 한다.

제5조(경영진단기획단의 구성) 제목중 “경영진단기획단의 구성”을 “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진단기획단의 설치”로 하고 1항중 “경영진단기획단”을 “양주군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진단기획단”으로 하며, 팔호 속의 “경영진단기획단”을 “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진단기획단”으로 한다.

제7조(대상사업선정)제1항중 “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발굴단”을 “경영수익사업발굴 및 진단기획단”으로 하고 “자치단체장이”를 “군수가”로 하며 동조 제2항중 “자치단체”를 “양주군의”로 한다.

제8조(투자기금의 운용계획)제2항 제3호중 “경영수익사업발굴단”을 “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진단기획단”으로 한다.

제9조(회계공무원)제1항 제2호중 “기획실장”을 “기획감사실장”으로 하고 제1항 제3호 중 “예산계장”을 “자치경영계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(회계관리)중 “지방자치단체”를 “양주군”으로 한다.

제11조(결산 및 보고)제1항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경영진단기획단”을 “군수와 경영수익사업발굴 및 진단기획단”으로 하고 제2항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은”을 “군수는”으로 하고 “지방의회”를 “양주군의회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경영수익사업) 이 조례에서 “경 영수익사업”이라 함은 <u>자치단체 경영수 익사업 발굴단</u> 에서 협의 선정한 사업으 로서 실행가능성과 채산성이 확실하고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지 대한 사업으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사업을 말한다.	제 2조(경영수익사업)----- ----- <u>양주군 경영수익</u> <u>사업발굴 및 진단기획단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4조(기금의 운용관리)①~②(생략)  1.~2. (생략) 3. 기타 <u>자치단체장이</u>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 4. (생략)	제4조(기금의 운용관리)①~② 현행과 같음  1.~2.(현행과 같음) 3.---- <u>군수가</u> ----- --- 4. (현행과 같음)
제5조(경영진단기획단의 구성) ①투자기 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각호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<u>경영진단기획단</u> (이하 “ <u>경영진단기획단</u> ”이라 한다.)을 둔다.	제6조( <u>경영수익사업발굴 및 진단기획단의 설치</u> )①----- --- <u>양주군경영수익사업발굴및진단기획단</u> (이하 “ <u>경영수익사업발굴및진단기획단</u> ”--)-- ---.
제7조(대상사업선정)①대상사업선정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<u>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발굴 단</u> 의 심의를 거쳐 <u>자치단체장이</u> 결정한다.  ② <u>자치단체</u> 의무적 추진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직접대 상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.	제7조(대상사업선정)①----- --- <u>경영수익사업발굴 및 진단기획단</u> <u>군수가</u> 결정한다.  ② <u>양주군의</u> ----- ----- -----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투자기금의 운용계획) ①~②(생략) 1. ~2.(생략) 3. 경영수익사업발굴단에서 협의 선정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. (생략)	제8조(투자기금의 운용계획) ①~②(현행과 같음) 1. ~2.(현행과 같음) 3. 경영수익사업발굴 및 진단기획단----- 4.(현행과 같음)
제9조(회계공무원) ①(생략) 1. (생략) 2. 분임운용관 : 기획실장 3. 분임지출원 : 예산계장 ②(생략)	제9조 (회계공무원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: 기획감사실장 3. ----- : 자치경영계장 ② (현행과 같음)
제10조(회계관리) 투자기금을 위한 회계 관리는 제9조의 회계공무원이 예산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이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·지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.	제10조(회계관리)----- ----- ----- 양주군----- ----- -----
제11조(결산 및 보고) ①기금특별회계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지침에 의거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경영진단기획단에 보고 하여야 한다.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금 특별회계 예산서와 전항의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	제11조(결산및보고) ①----- ----- ----- 교수와 경영수익사업발굴 및 진단기획단----- --- ② 교수는----- ----- 양 주군 의회-----